# 비슬원 급여이용 정보

**1. 이용대상 :**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1,2등급과 3,4,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

**2. 입소계약(비슬원 입소계약규정에 의함 - 입소계약서 작성시 계약규정 제공)**

- 일반 입소자의 경우
  ※ 입소상담 → 입소결정 → 입소계약 → 입소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·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(관할관청 : 달성군청)
  ※ 입소상담 → 읍사무소 입소이용신청 → 입소이용의뢰서 등록 → 입소결정 → 입소계약 → 입소

**3. 의료기관 이용절차**

- 시설의 급여제공 : 수급자의 일반적인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보호자가 시설에 일임한 사항.
- 응급시 급여제공 : 수급자가 장기간 병원을 이용해야할 경우 보호자에게 일임함.
  **※ 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와 약제비는 개인 별도 부담**

**4. 시설물의 사용**

- 입소계약규정 제2조(사용시설)에 따라 기구, 기타 조작물 및 식당, 욕실, 휴게실, 프로그램실, 기타 공용시설에 대하여는 입소자는 비슬원의 관리에 따라 공용하는 것으로 하며, 입소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한 손실이 생겼을 경우 보호자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
**5. 직원의 배치**

| 직 종 | | 원 장 | 사회복지사 | 간호조무사 | 요양보호사 | 조리원 | 위생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배 치 인 원 | | 1 | 2 | 1 | 13 | 3 | 2 |
| 근무 사항 | 평 일 | 주5일 근무제로 휴일에는 1명 근무 | | | ■주.야간근무제10명<br>■주간근무제 3명 | 격일근무제2명<br>시간제근무제1명 | 파견근무 (일자리사업) |
| | 휴 일 | | | | | | |
| 근무 인원 | 07:00~18:00 | | | | | 1 | |
| | 09:00~18:00 | 1 | 2 | 1 | 4~6 | | 2 |
| | 18:00~09:00 | | | | 3 | | |

**6. 급여 및 비급여 이용료**

**○ 급여 사항** (단위 : 원)

| 등 급 | 1일 수가 | 합 계 (30일 기준) | 공단 부담금 | | | 법적 본인 일부 부담금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일 반 | 경감대상(중위소득기준) | | 일 반 (20%적용) | 경감대상 | | 국민기초 수급권자 |
| | | | | (100%~51%) | (50%이하) | | (12%적용) | (8%적용) | |
| 1 등급 | 93,070 | 2,792,100 | 2,233,680 | 2,457,040 | 2,568,740 | 558,420 | 335,050 | 223,360 | 면제 |
| 2 등급 | 86,340 | 2,590,200 | 2,072,160 | 2,279,370 | 2,382,990 | 518,040 | 310,820 | 207,210 | |
| 3~5등급 | 81,540 | 2,446,200 | 1,956,960 | 2,152,660 | 2,250,510 | 489,240 | 293,540 | 195,690 | |

※ 급여 이용료에는 입소 시설 내에서의 간병·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, 요양관리, 간호, 기능훈련, 기타복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말합니다.

**○ 비급여 사항** (단위 : 원)

| 항 목 | 1일기준 | 합 계 | 산 출 근 거 |
|---|---|---|---|
| 식재료비 | 7,200 | 240,000 (30일기준) | ■월식단표(밥, 유동식, 국, 4찬 이상 / 조리실 앞 게시)<br>■요구에 따른 외부음식구입 및 특별식 제공시 - 실비정산<br>■간식 일일 3회(오전, 오후, 저녁) 제공 |
| 간 식 비 | 800 | | |
| 이·미용 | 실 비 | 실 비 | ■원내 자원봉사자 연계 시 무료제공, 외부미용실 이용시 실비정산 |
| 상급침실 | 해당없음 | 해당없음 | ■상급 침실 없음 |

**7.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역**

| 항 목 | 가입처 | 가입금액 | 기 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요양시설배상책임보험 | 한국사회복지공제회 | 1사고당 5억원 | 2025.11.2.~2026.11.1. | 음식물 3천/가스 8천 |
| 화재보험 | 현대해상화재보험 | 18억3천만원 | 2024.10.30~2027.10.29. | 시설/집기/배상 |
| 승강기배상책임보험 | 현대해상화재보험 | 1인당 8천만원 | 2025.9.7.~2026.9.6. | 승강기 사고 배상 |